

日本の食品 衛生行政과 當面對策

李 能 宰
保健社會部 保健教育課

序 文

이 글은 筆者가 昨年(1989年)에 WHO와 우리政府(總務處)當局의 計劃에 의거 두차례에 걸쳐 3個月間 日本에 派遣되어 厚生省과 地方自治團體의 衛生關聯部署와 食品衛生協會등 有關團體를 訪問, 見學하며 얻은 資料를 整理한 것이다.

筆者는 以前에도 日本國立公衆衛生院의 特別課程을 履修하는 등 6次에 걸쳐 約 18個月間的 日本研修經驗을 갖고 있는데 이 글에는 그간의 見聞事項도 包含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1. 日本食品衛生行政의 沿革

日本の 近代食品衛生行政은 1878年 「아니린等 曠物性 그림물감으로 飲食物에 着色할 경우의 取締方法」이 各府縣(우리나라의 市·道에 해당함)에 示達되어 食品에의 有害着色行爲를 規制하려고 한데서 始作되었다.

勿論 그 以前の 德川幕府時代에도 우리 朝鮮王朝의 典醫監과 같은 衛生擔當部署가 있었을데지만 立法形態를 갖추고 組織的인 衛生行政을 한것은 所謂 明治維新(1868年)以後의 일이다.

1900年(明治 33年)에는 食品衛生에 關한 包括的인 法律인 「飲食物等 物品取締에 關한 件」이 制定되었고, 이를 近處로 하여 牛乳營業取締規則, 飲食物防腐劑取締規則 등의 內務省令이 制定되었다.

이러한 食品衛生業務는 1938년까지는 內務省 衛生局에서 管掌하다가 同年 厚生省의 發足과 함께 厚生省으로 移管되었으나, 地方에서는 1945년의 終戰時까지 警察部署에서 擔當하여 왔다.

敗戰後인 1947年, 占領軍인 맥아더司令部(GHQ)의 指揮下에 民主體制로 再整備되면서 食品衛生法도 새로 制定되어, 오늘날과

같은 食品衛生行政體制를 採擇하였고, 一般 警察이 아닌 專門的인 知識을 갖춘 食品衛生監視員에 의한 指導·監視등 法制化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12次에 걸친 法改正을 통하여 社會與件變化에 對應해 오고있다.

2. 現行 食品衛生行政機構의 概要

中央政府的 食品衛生行政은 厚生省 生活衛生局的 食品保健課, 乳肉衛生課, 食品化學課에서 擔當하고 있는데, 食品保健課가 主務課로서 檢疫所業務管理室(17名)과 新開發食品對策室(4名)等 40名の 專門家를 거느리고 輸入食品對策과 食品關係法令整備, 制度改善등 業務를 맡고있다.

檢疫所業務管理室은 원래 傳染病管理部署인 公衆衛生局에 屬해 있었으나 輸入食品管理業務의 比重이 餘他 업무에 比하여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1984년부터 食品保健課所屬으로 되었다.

地方的 가장 큰 自治團體로서 우리의 市·道에 該當하는 都·道·府縣과 政令市에는 衛生部(東京都에는 衛生局)에 食品衛生主管課가 있어서 各營業種類別로 地域實情에 맞추어 施設基準등을 定하고, 主要 營業施設에 關한 許可業務와 一線 保健所에서 行하는 食品衛生關係업무를 指導監督하고 있다.

衛生業務의 第1線機關인 保健所の 衛生課에는 大部分의 食品衛生監視員이 配置되어(保健所當 5~10名) 營業所의 許可管理業務와 監視指導業務를 맡고 있으나 效率의 이고 充分한 業務遂行을 위하여는 人力이 크게 不足하여 營業者團體의 自願指導者인

「食品衛生指導員」의 協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主要 海·空港의 檢疫所에도 衛生課가 設置되어 輸入食品 管理業務에 臨하고 있는데 이들은 別個의 項으로 따로 說明코자 한다.

3. 食品營業施設과 監視 指導

食品衛生法の 規定에 의해 許可를 받아야 할 營業施設은 1988年末現在 飲食店營業等 34個業種 2,620,757個所이며, 許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施設(集團給食施設等 11種) 1,647,998個所를 合하여 全國에 約 427萬個所의 食品關係施設이 있다.

이들 施設에 對한 指導·監視는 食品衛生法施行令에 年間要監視回數가 定해져 있는데 飲食店營業, 乳處理業등 年 12回以上の 監視를 要하는 施設이 있는가하면, 장난감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年 1回의 監視만을 要하는 시설 등 업종별로 다르다.

1988年の 경우 全國 6,871名の 食品衛生監視員이 行한 指導·監視實績은 延 590萬回에 達하는데 이것은 上記 427萬個所에 대한 法定監視回數인 延 3,031萬回(個所)의 19.5%에 不過한 監視率이다. 特히 人力이 不足한 愛媛縣, 京都府등 5~6個府縣의 경우에는 監視率이 10%도 안되는 實情이라 한다. 1985年 11月 日本 全國 食品衛生監視員協議會 第25次研修會에서 發表된 愛媛縣 松山中央保健所の 年度別監視實績을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한편 1988年度에 實施한 590回(全國)의 監視結果 措置된 行政處分件數는 <表 2>와 같다.

表 1. 食品營業施設에 對한 監視率

(愛媛縣 松山保健所)

區 分 \ 年 度	1980	1982	1984
對 象 施 設 數	15,403	14,837	13,699
法 定 監 視 回 數	119,794	119,681	116,258
監 視 實 施 回 數	5,007	5,689	6,318
監 視 實 施 率	4.2%	4.8%	5.2%

表 2. 食品관계 施設에 對한 行政處分實績

(1988年 全國)

區分 行政處分內容	要許可營業	許可를 要하지 않는 營業	計
總數	9,571	2,979	12,550
營業許可取消命令	—	—	—
營業禁止命令	142	55	197
營業停止命令	482	82	564
改善命令	86	—	86
物品發棄命令	50	59	109
其他	8,804	2,782	11,586
告發	7	1	8

4. 日本食品衛生協會와 食品衛生指導員

1947年 食品衛生法の 公布와 同時에 새로운 食品衛生行政체제를 갖추고 全國의 保健所에 食品衛生監視員을 配置, 監視·指導業務에 臨하게 하였으나, 食品衛生業務가 廣範圍한데다가 多様な 專門知識도 要求되는 것이며, 400餘萬個所의 營業施設을 制限된 數의 監視員(當時 2,000여명)의 人力만으로 效果의인 指導·監視를 할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하여 關聯業界의 自律의인 協力없이는 食品衛生行政의 目的達成이 遼遠할 것이라는 것을 痛感하고 그때까지 自生的으로 組織된 飲食店聯合會, 豆腐제조업協會와 같은 同業者中心의 團體들을 厚生省當局과 關聯有志들이 橫적으로 묶어서 1948年 11월에 「日本飲食協會」를 創設하였다. 그러나 當時는 敗戰後의 極甚한 食糧난으로 糊口之策도 어려웠던 時節이었으므로 衛生에 對한 關心이 적어서 同協會의 活動도 10여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1950年代後半 經濟적으로 潤澤해지면서 食品衛生에 대한 關心도 높아지고, 1964年의 東京올림픽에 對備코자하는 政府當局의 支援도 活發해져 協會의 名稱을 「日本食品衛生協會」로 바꾸면서 여러가지 事業을 始作하였다. 그중에서도 自身들의 衛生水準向上을 위하여 自體內的 廣範하고 豊富한 人力

을 活用코자 食品衛生指導員을 養成하기 始作하였는데, 마침 食品衛生監視員增員의 必要性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政府預算事情이나 定員確保문제 때문에 限界가 있어서 고심을 하고있던 政府當局에서 同 自律指導員을 積極活用코자 同指導員養成經費를 國庫에서 支援하게되었고, 以後 현재까지 60,000餘名의 指導員을 길러냈다.

食品衛生指導員은 食品衛生協會所屬의 營業者나 關係者中에서 學識과 德望이 있고 時間的인 여유가 있는 適格者를 선발, 協會의 指導員養成課程을 履修시켜서 協會長이 委囑하는 名譽職으로서, 管轄保健所 衛生課內에 事務室을 두고, 交代로 支援勤務하면서 擔當 食品衛生監視員과 긴밀하게 協調하며 營業許可, 施設改善등에 관한 相談指導를 통하여 衛生水準向上에 크게 公헌하고 있다.

5. 輸入食品 監視對策

가. 對策의 概要

日本은 現在 食料品需要의 約 35%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며, 輸入件數가 每年 늘어나고 있어서, 輸入食品의 安全性이 國民保健上 점점더 重要한 問題로 擡頭되어 그 監視體制를 강화해가고 있다. 特히 1986年 4月 26日에 發生한 체르노빌原子力發電事故를 계기로 食品에의 放射能汚染檢査 등을

더욱 嚴重하게 行하는 한편, 輸入食品窗口인 檢疫所相互間을 온라인化하고, 外國公의 檢査機關에 의한 檢査 data의 受容을 적극적으로 行하는등 業務의 效率化에 의하여, 違反輸入食品의 國內流通防止에 노력하고 있다.

1987年 食品등(식품, 첨가물, 器具, 容器 包裝 및 乳兒用장난감)의 輸入件數는 550,568件으로서 前年對比 15.4% 증가한 것이지만 重量으로 보면 22,055千톤으로서 前年과 비슷한 水準이다.

輸入申告된 550,568件中 14.2%에 해당하는 78,050件에 對하여 實驗室檢査를 行하였는데, 檢査件數의 2.1%인 572件이 日本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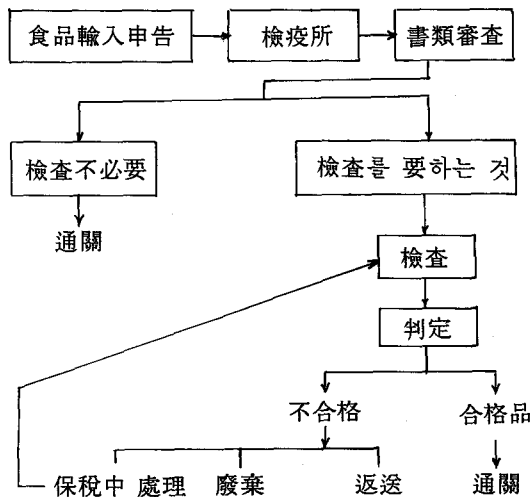
品衛生法の 規定에 不適合한 것으로 判定되어 輸出國으로의 返送·廢棄 등 措置가 取해졌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로부터 輸出되었던 인스턴트라면(指定外의 添加物인 포리소르베이트 含有) 등 37件 51,426kg도 包含되어 있다.

檢査를 실시한 78,050件中 26,774件에 對하여는 行政檢査(檢疫所에서 直接 行하는 收去, 檢査)를, 44,944件에 對하여는 日本國內의 指定檢査機關(57個所)에서, 그리고 6,332件에 對하여는 日本政府에 登錄된 輸出國公의 檢査機關('89. 10月末 현재 46個國 1,505機關 登錄)에서의 檢査結果를 認定해준 것이다.

表 3. 年度別 輸入食品 申告處理實績

年度	申告件數(A)	重量(1000톤)	行政檢査件數(B)	檢査率(B/A)	不合格件數(C)	不合格率(C/B)
				(%)		(%)
1965	94,986	12,765	5,574	5.8	679	12.1
1970	175,380	16,072	11,507	6.6	1,841	16.0
1975	246,507	20,775	21,461	8.7	1,634	7.6
1980	314,177	23,108	16,902	5.4	1,066	6.3
1985	384,728	22,665	14,892	3.9	308	2.1
1987	550,568	22,055	26,774	4.9	572	2.1

그림 1. 輸入食品 檢査 흐름圖



輸入食品은 國內食品과 달리, 그 製造過程등이 不明한데다가 나라에 따라 食品에 對한 法的 規制事項이 다르기 때문에 日本國內規定에 不適合한 食品등이 輸入될 우려가 적지않아서, 이에 對한 監視體制強化가 要求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全國 21個 海·空港檢疫所에 80名의 숙련된 食品衛生 監視員을 配置하고, 高度의 各種 檢査·分析機器를 갖추어 놓고 있다. 또한 申告處理 事項을 컴퓨터시스템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 書式을 정비하고, 厚生省本部和 檢疫所 相互間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놓고 있다.

최근에는 輸入農産物中 수확후에 사용되는 農藥(Postharvest 농약)의 殘留를 問題視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日本은 國土가 좁은 탓으로 농산물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짧고 長期間이 소요되지 않아 지금까지 收穫後의 농약사용은 行하여지지 않았으나 國土가 廣大한 主要農産物의 輸出國인 美洲등지에서는 수확 후 遠距離輸送과 長期保管을 위한 農藥種類의 使用이 一般的인 現象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들 輸入農産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에 관한 基準設定을 위한 調査研究과 함께 輸出國과의 協議등을 통하여 이런 종류의 농약, 所謂 postharvest農藥의 殘留許容基準을 定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노빌原子力發電所事故로 유럽地域에서 生産되는 食品에의 放射能汚染이 큰 問題로 대두되어, 1986. 11. 1. 「食品放射能에 관한 檢討會」의 報告를 바탕으로 하여 放射能의 暫定許容基準을 定하고(基準: Cesium 134 및 Cesium137의 合計가 食品 1kg當 370 Becquerel 以下), 유럽産 全輸入食品을 對象으로 檢査를 實施하고 있다.

유럽地域으로부터의 輸入食品 物量이 많은 5個 檢疫所(東京, 橫濱, 大阪, 神戶, 成田空港)에서는 放射能精密分析裝備인 「게르마늄半導體檢出裝置」에 의해 精密檢査를 실시하고, 大阪空港, 名古屋檢疫所 등 7個所에서는 「신치레이손서베이메타」에 의한 간이 시험(screening)을 실시하여, 의심스러운

나. 食品中の 放射能 檢査對策

1986. 4. 26. 새벽에 發生한 소련의 체르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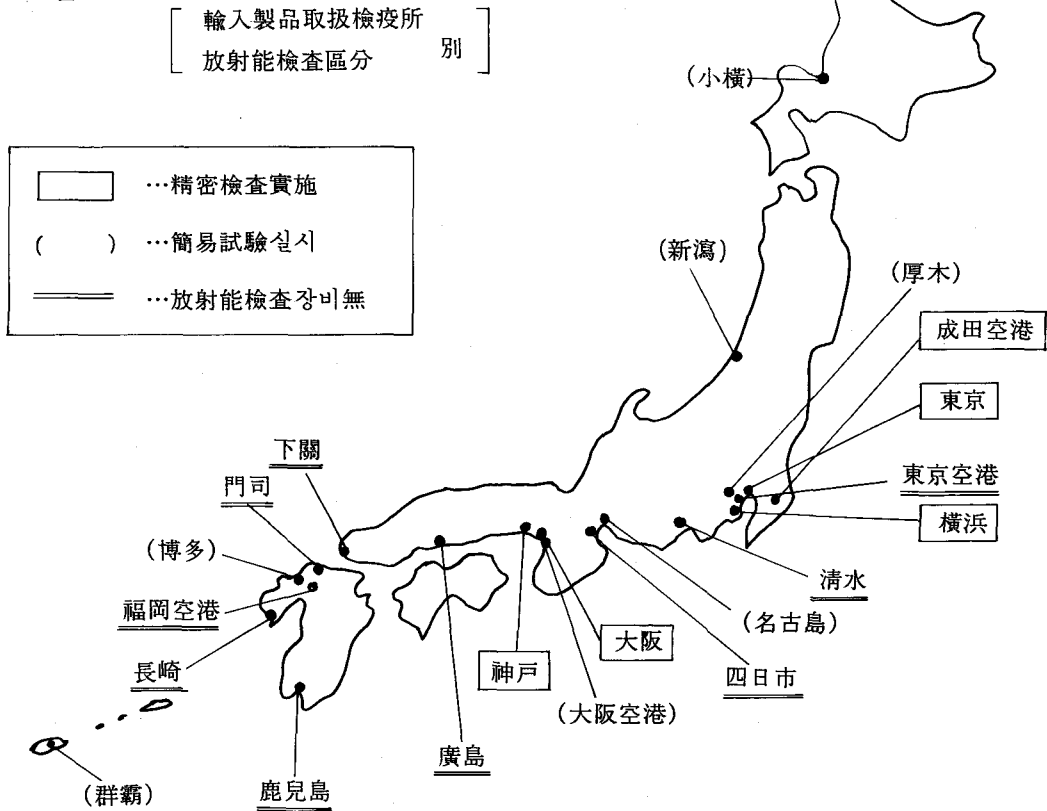




그림 3. 輸入食品에 對한 放射能檢査實施區分

食 品	國(產地)	其 他 유럽地域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터키,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소련(우랄산맥以東地域은 除外)	
Nut類, 香辛料, 野草加工品, 果實加工品, 牛肉, 馴鹿肉 비프엑기스等 농축調味原料		
食肉 및 食肉製品, Natural Cheese, 粉乳, 穀類加工品 野菜(加工品포함) Hop, 豆類, 벌꿀, 캐비아(Caviar) 魚貝類(沿岸, 內水面의것)		
上記以外の 食品		

 ...該當食品에 對하여 全 Lot 檢査 實施

 ...五大檢疫所(成田, 東京, 橫浜, 大阪, 神戶)에서 10%目標로 檢査實施하되, 國別, 食品別로 最初로 輸入되는 것은 반드시 檢査實施.

것이 있을 경우에 國立衛生試驗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며, 輸入物량이 적은 長崎등 9 個 檢疫所에서는 對象檢體를 直接 國立衛生檢疫所에 보내어 檢査하도록 하고있는데, 1989年 3月까지 38件의 輸入食品이 放射能 暫定許容基準에 不適合한 것으로 判定되어, 輸入者로 하여금 11個 輸出國으로 返送토록 조치하였다. 檢疫港別 放射能檢査區分은 <그림 2>와 같으며, 輸入製品別 放射能檢査區分은 <그림 3>과 같다.

다. 輸出國公의 檢査機關의 登錄·受容制度에 관하여.

輸出國公의 檢査機關 list는 厚生省 環食第 77號(1982. 3. 31)「輸入食品등 檢査實施指針」에 의거 作成하기 始作하였는데 輸出國의 公的檢査機關中 다음 要件을 갖춘 檢査機關의 檢査성적을 下記條件下에서 받아들여, 輸入通關時의 檢査를 省略하도록 되어 있다.

1) 節次

輸出國政府의 口上書에 의한 公的檢査機

關申請(外務省 經由)을 근거로, 다음 조건에 적합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厚生省의 輸出國公的檢査機關 list에 登錄하는 것임.

2) 檢査結果 受容條件

AOAC法에 의한 檢査를 實施할 能力이 있는 檢査機關으로서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檢査기관이 實施한 檢査 결과일 것 (단, 食品添加物의 成分規格試驗은 日本의 公定規格에 의하여 실시한 檢査結果 일 것)

① 輸出國 또는 州直轄의 檢査機關

② 輸出國 또는 州가 認定, 指定 등을 행하고 있는 檢査機關

3) 檢査 結果의 受容

上記 輸出國公的檢査機關에 의한 檢査결과는 日本國內 指定檢査機關(日本食品衛生協會등 57個機關)의 檢査결과와 同等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등에 의한 輸送도중에 衛生狀態가 變化할 事態가 있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檢査事項(세균, 마이코톡신等)에 대하여는 檢査結果의 受容對象에서 제외한다.

表 4. 輸出國 公的檢査機關 登録狀況

(1989. 10. 11 現在)

國 名	機 關 數	國 名	機 關 數
아 이 스 랜 드	5	中 國	7
아 일 랜 드	11	칠 레	13
미 국	28	마 크	17
아 르 젠 틴	1	동 서	1
영 태 리	108	터 키	220
인 도 네 시 아	198	뉴 지 랜 드	4
인 도 네 시 아	8	웨 이	30
호 스트 리 아	4	가 리	108
오 스트 리 아	26	필 리 핀	22
화 나 다	17	핀 랜 드	5
큐 바	26	브 라 질	5
그 리 이 스	12	프 랑 스	150
과 테 마 라	2	블 가 리 아	12
클 럽 비 아	11	벨 기 에	73
싱 가 포 르	1	폴 란 드	2
스 위 스	3	포 르 트 칼	10
스 웨 덴	4	트 라 스	5
스 페 인	25	시 코	27
스 리 랑 카	30	모 로 코	3
국	222	유 고 스 라 비 아	17
국	3	셈 부 르 그	3
국	9		
국	13		
체 코 스 로 바 키 아	2	(計)46個國	1,505機關

6. 新開發食品 對策

가. 健康食品 對策

日本에서도 健康食品붐은 10年前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터무니 없는 高價販賣로 소비자와 자주 紛爭을 일으키고 있어, 좋지않은 印象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成長을 계속해와서 현재 日本國內에서 流通되고있는 所謂 「健康食品」은 2000種을 넘고있다고 하며, 그 市場規模는 年間 4,000~5,000億圓(¥)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近來 平均壽命의 급격한 伸長으로 高齡化社會가 到來되어 各種 成人病의 有病率이 증가됨에 따라 平素의 食餌療法등을 重要視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이 소비자의 잠재의식 속에 파고들어 健康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었다고 보고있다.

이들 소위 健康식품은 食品衛生法을 위시하여 藥事法, 不當景品 및 不當表示防止法, 割賦販賣法등 여러가지 法令에 의해 團束되고 있으나, 特히 社會的으로 問題가 되고있는 것은 이러한 法令에 저촉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교묘하게 一般消費者에게 不利益을 끼치고있는 點이다. 소위 健康식품의 제조·판매업자들은 아직 科學的으로 充分히 解明되어있지 아니한 部分에 대하여, 營業者側에게 有利한 정보만을 一方的으로 提供함으로써 一般消費者가 제품을 선택·利用하는데에 큰 混亂을 주고있는 形便이다.

그리하여 厚生省에서는 1984年 7月 厚生省 組織令을 改正하여 生活衛生局 食品保健課內에 「健康食品對策室」을 設置하여 對策을 강구하다가 1988年 4月에는 그 名稱을 「新開發食

品對策室」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新開發食品對策室에서는 食用經驗이 적고 毒性分이나 有害物質含有與否가 不明確한 品目에 대하여 慢性毒性試驗을 包含한 安全性評價作業을 行함과 同時에 分析方法등을 확립하는 한편, 通常的인 섭취로는 문제가 되지않으나 多量的 계속적인 섭취에 의하여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檢討도 進行하고 있다.

또한 1985年 8月부터 健康食品에 관한 公益法人인 日本健康食品協會(재단법인)로 하여금 公衆衛生次元에서의 基準을 設定하고, 그 基準에 맞는 제품에 대하여는 協會 認定마크를 첨부토록하는 自律管理制度를 실시케하는 등 新開發食品의 제조·판매행 위로 因하여 一般 소비자에게 不利益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指導·감독하고 있다.

나. 機能性食品 對策

종래에는 食品에 2가지의 機能이 있다고 해왔다. 卽 食品中の 營養소가 生體에 대하여 나타내는 生體維持機能 또는 「營養機能」을 第1機能이라 하고 食品成分이 生體感覺에 맛을 나타내는 感覺機能을 第2機能이라고 일컬어왔다.

그러나 최근 健康에 대한 關心의 高潮와 食品科學의 發達에 힘입어 食品에는 단순한 「영양」이나 「맛」의 機能 以外에 第3의 기능이 있음에 注目하게 되었다.

이 第3의 機能은 生體의 恒常性維持(Homeostasis) 및 健康增進에 作用하는 高次元의 調節機能을 말하는 것으로서 疾病의 防止와 回復(고혈압, 당뇨, 先天性代謝異狀 등) 機能, 老化制禦機能(過酸化脂質生成抑制 등) 등에 注目하고 있다. 최근의 食品産業은 이들의 機能이 보다 有効하게 發現되고, 特定目的에 맞도록 食品에 物理的, 生化學的, 生物工學의 方法으로 附加價値를 賦與하고 있는데, 厚生省등 관계 當局에서는 이들 食品群을 「機能性食品」으로 分類하고,

新開發食品對策室에서 이들 食品에 대한 許可·表示등의 制度를 檢討하고 있다.

7. SAM計劃 21.

厚生省 食品衛生對策의 業務課인 食品保健課에서는 21世紀를 위한 對策 卽 2000年 까지의 食品衛生對策으로서 所謂 「SAM計劃21」이란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Safety and Amenity에서 따온 造語로서 安全하고 快適한 食生活의 21世紀를 目標로 하고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食品衛生對策은 食品衛生法의 目的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食品으로 因한 危害의 防止, 卽 安全쪽으로 치우쳐 있었으나 生活環境衛生의 向上 및 食生活의 多樣化로 食品對策도 安全한 食品만으로는 今後의 對策으로 滿足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安全하고 快適한 食生活를 目標로 삼게된 것이다.

「SAM計劃 21」의 遂行을 위한 重要한 課題로서 6가지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國民意識의 向上

둘째, 食品에 대한 정보를 行政府內에서도 더욱 빨리 入手하여 國民에게 환류(feed back)시키기 위한 情報網의 整備.

셋째, 安全確保; 食品衛生의 根幹은 역시 안전(Safety)에 있으므로 既存의 法體系와 規格·基準을 總點檢하여 內容을 充實히 한다.

넷째, 輸入食品對策; 輸入食品에 對한 規制는 國內生産品과 同一水準으로 하더라도 貿易摩擦의 큰 原因이 되고있어 國內外間에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對應하기 위한 對策의 樹立.

다섯째, 食品安全을 確保키 위한 學問的 뒷받침을 해줄 調査研究體制의 確立.

여섯째, 人力確保; 食品衛生業務를 一線에서 다루고있는 有資格公務員으로서 食品衛生監視員이 있으나, 全國 852個 保健所에 配置되어 있는 6800여명과 20個 檢疫所에

配置되어 있는 80여명만으로는 國內製造食品과 輸入食品에 對한 認·許可, 指導·監視業務를 充實하게 할 수 없으므로 보다 많은 人力確保에 努力하는 한편 食品營業從業者中에서 自願奉仕指導員을 선발, 養成하여 全國적인 組織을 갖추게 하여 業界 스스로 安全하고 快適한 食生活風土를 造成하기 위해 努力하도록 한다.

8. 缺 語

오늘날의 日本을 世界最大의 貿易黑字國

으로서 1人當國民所得에 있어서도 歐美 선진국들을 앞질러있는 經濟大國으로 理解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國民의 保健衛生水準도 세계최고의 水準에 올라서 있음은 흔히 看過되고 있는 것 같다. WHO등 斯界에서 地域間의 保健衛生수준을 비교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指標로 삼고있는 것으로서 널리 活用되는 國民의 平均壽命과 嬰兒死亡率에 있어서 日本이 세계 제일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은, 이들 指標를 國家別로 比較한 다음 表에서 알수 있다.

表 5. 平均壽命에 嬰兒死亡率의 國家間比較

(기준년도: 1984~1986)

국 가 별	평 균 수 명		영 아 사 망 율	비 고
	남 자	여 자		
일 본	75.61	81.39	5.4	'86. UN통계연감. '89. 보사백서.
스 웨 덴	73.97	79.99	6.4	
영 국	71.80	77.74	9.5	
서 독	71.54	78.10	9.6	
프 랑 스	71.52	79.70	8.3	
미 국	71.20	78.20	10.6	
체코슬로바키아	67.10	74.30	15.3	
한 국	64.90	71.30	32.6	
			13.3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율은 發表時點과, 발표기관에 따라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어 信憑性이 희박하다 하겠는데 이는 保社統計體制의 취약함도 그 原因의 하나이다. 日本의 厚生省통계담당부서(統計情報部)는 4個課에 410여명의 專門家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比하여, 우리나라 保健社會部 통계담당부서는 1個課單位 조직내에 20여명이 있을 뿐이다.

위의 國民保健衛生에 관한 指標뿐 아니라 최근에 UN에서 개발하였다고 하는 國家의 社會開發指數 即 平均壽命과 國民 1人當所得 그리고 成人의 文字解得率을 곱하여 求하는 종합적인 指數에서도 우리들이 흔히 가장 대표적인 先進國으로 치부하고 있는 美國은 20位圈 근처에서 맴돌고 있음에 반하여 日本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전 國內 매스콤에 소개된 바 있다.

昨年(1989年) 12月 東京 白金台에 있는 國立公衆衛生院에서 開催된 衛生行政세미나에서 日本 衛生行政의 元老로 認定받고있는 橋本正己氏의 講演內容은 지금까지의 日本

衛生行政과 앞으로의 方向을 集約해놓은 것 같아 펍 印象的이었고 부러운 內容이어서 그 要指를 紹介해본다.

即 『몇해전까지의 日本衛生行政은 스웨덴, 영국등 衛生先進國에서 해오던 것을 그대로 본따서 좇아가기만하면 政策상의 큰 잘못이 없었으며, 有能한 人材들이 管理를 잘 해서 오늘날의 水準까지 끌어올렸다.

앞으로의 日本衛生行政은 先進國이라고 하는 모델(教科書)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현직에 있는 여러 實務者들이 긍지를 갖고 倍前의 노력을 해가며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內容이 있다.